

성인학습과정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제정 : 2022.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학칙 「학칙 제31조의 11」에 의거하여 성인학습과정의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대상·절차와 범위 등 학점인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대학교 성인학습과정에 입학한 허가받은 자 또는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선행학습 학점인정 대상 등) 선행학습 학점인정 대상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3.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제4조(선행학습 학점인정) ① 선행학습 학점인정은 우리대학교 성인학습자 학과에서 개설·운영되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선행학습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대학의 학점인정심의절차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

1. 제3조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의 20%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 자격증은 전공 교과목과 관련하여 아래 기준에 의한다.
 - 기술사: 7학점
 - 기능장: 5학점
 - 기사 및 산업기사: 3학점
 - 기타 국가자격증: 3학점까지 가능

③ 선행학습 학점인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졸업학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 등) ①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교육 이수 결과에 대한 학점인정의 심의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② 학점인정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학과별로 학점인정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과의 교원으로 한다.

③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기능과 역할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점인정 절차) ① 교학처는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계획을 학기별로 대학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선행학습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 제3조에 의한 학점인정 대상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③ 교학처는 접수된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를 해당 학과로 발송하고, 학과는 학점인정소위원회에서 학과 자체 평가인정 기준(평가지표 등)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선행학습 학점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학점인정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⑤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최초 평가인정 결과 및 재평가인정 결과를 교학처에 제출한다.

⑥ 교학처는 학과별로 평가 인정된 결과를 수합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⑦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 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⑧ 확정된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 결과를 학과 및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대학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한다.

제7조(학점인정 신청) ① 학점인정 신청자는 입학허가 시점부터 졸업이전 시점까지 매학기 선행학습에 대한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일정에 의한다.

② 매학기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은 수강신청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1. 과거에 신청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제출한 자
2. 과거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가 학점인정을 불인정한 자

④ 학점인정 신청자는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접수한다. 단, 신청과정에서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안내와 상담을 거치도록 한다.

⑤ 학점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 1]
2. 선행학습 학점취득 서류 또는 선행학습 교육 이수증 등의 근거서류

제8조(평가의 실시) ①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다.

② 평가인정에 의한 성적평가는 대학 규정에 따라 배점(백분율) 또는 P/F 여부만을 학과 자율로 정한다.

③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신청자 제출 자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3]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학점인정소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보완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학점인정소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지 후 14일 이상 경과한 뒤 신청자의 추가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 평가인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단,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경과기일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5호에 의한 재평가시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 재평가 신청서 [별지 4]
2. 제7조 ⑤항에 해당하는 재평가 증빙자료

⑧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절차는 최초 평가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평가인정 결과 확정) ①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위하여 학과의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최종 학점인정 평가 심사 결과를 관련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인정 결과에 대하여 [별지 5]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평가인정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심의한다.

1. 선행학습 학점인정 기준에 준하는지 여부
2. 개별 신청자의 평가인정 학점한도 초과여부
3. 기타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 결과 오류가 확인된 경우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학점인정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학점인정 결과 통보 등) ① 교학처는 학점인정 승인결과를 [별지 6]호 서식에 의하여 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별지 7]호 및 [별지 8]호 서식에 의해 각 학과와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학점인정 승인서는 [별지 8] 서식에 의하며, 선행학습 학점인정 승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인적사항
2.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 세부내용 : 교과목명, 인정학점
3. 신청자가 선행학습으로 인정받은 총 학점 수
4. 학습자에게 향후 학습수행에 도움이 되는 권고사항 등

제11조(학점인정 결과 확정 적용) ① 대학(교학처)은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인정 결과에 따라

5-0-39 성인학습과정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평가 인정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 면제
2. 평가 인정된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3. 평가 인정된 학점은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졸업학점에 포함

㉔ 대학은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득학점 과정을 인정하고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㉕ 학생의 수업연한은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①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에 의한 평가인정 결과의 확정은 신청자의 학기별 등록금 고지 및 납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신청자가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에 의한 평가인정 결과의 확정에 의하여 「학칙 제24조」 제3항의 최소이수학점을 미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행학습 학점인정평가 심사기준

선행학습인정 대상 기관 또는 자격종목	취득학점 또는 자격등급	이수 구분	교과목명	기준	학점		등급	비고
					정규	전공 심화		
			선행학습과 맞는 교육과정 내의 교과목(학과 학점인정소위원회의 인정에 의함)	'대학교육 편제단위 조사의 진로·취업분 야 기준'				

[유의사항]

- ① 선행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자격증은 3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취득 또는 이수한 결과에 한하여 인정함
- ② 선행학습 학점인정은 제4조에서 정한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 ③ 학점인정 교과목의 평가 학점은 P(Pass)로 평가

[별지 2] 선행학습 학점인정 교과목 학과평가서

선행학습 학점인정 교과목 학과평가서					
신청인	학과명		성명	학년	학번
	학점인정 신청현황	이수구분	인정신청 교과목 명		
계					
학습경험인정 대상기관 및 학습경험	교육기관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학점 또는 자격증 종류	인정 교과목 명		인정학점
	계				

◆ 교과목 평가인정 사항

학점인정신청 교과목 I	확인사항 (선행학습 학점인정 규정 적합도 등)	
	인정가능 자료 유형 및 적합도	
	평가결과	
학점인정신청 교과목 II	확인사항 (선행학습 학점인정 규정 적합도 등)	
	인정가능 자료 유형 및 적합도	
	평가결과	
학점인정소위원회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간 사		심 사 일

* ① 학과별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인정 심사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임(학과별 작성)
 ② 평가항목은 학과별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인정 심사기준을 활용함
 ③ 평가는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별로 선행학습 학점인정 규정에 적합한지 등을 평가함

[별지 3] 선행학습 학점인정 교과목 통보서

선행학습 학점인정 교과목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명			학 년			
학 번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직장)	(집)			
평가인정 신청과목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선행학습 기관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학점인정	
					인정	불가
	소계					
<p>상기인이 신청한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대하여 「학칙 제31조의11」 및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본 학과에서 심사한 학점인정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학점인정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재심사 신청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재심사 신청기일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학점인정 평가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대학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통보 및 최종 심사 후 학점인정이 확정됨을 안내합니다.)</p>						
재심사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장소		
학점인정 재평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통보 후 10일 이내	학과 사무실		
20 년 월 일						
(수신)			학과장 :	(서명)		
(수신)			귀하			
유의사항	※ 학과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학점인정 평가 결과를 학과장이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해야 함.(직접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우편 발송)					

[별지 5]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서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서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명			학 년	학년	학 번			
학점인정범 위	학점인정 신청사항(총괄)					학점인정소위원회 심사결과		
	졸업이수학 점	학점인정 신청범위	학점인정 신청사항			교양	전공	계
			교양	전공	계			
평가인정 신청과목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 점	학점인정 인정 불인정		
	소계							

교과목 평가인정 사항 신청 교과목에 대한 평가내용 및 결과

교과목	평가항목	평가 결과의 적정성
	확인사항 (선행학습 학점인정 규정 적합도 등)	
	인정가능 자료 유형 및 적합도	
	학점인정 판정	
	확인사항 (선행학습 학점인정 규정 적합도 등)	
	인정가능 자료 유형 및 적합도	
	학점인정 판정	
	확인사항 (선행학습 학점인정 규정 적합도 등)	
	인정가능 자료 유형 및 적합도	
	학점인정 판정	

학점인정위원회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별지6] ○○○○학년도 ○학기 선행학습 학점인정 심의 결과서

선행학습 학점인정 심의 결과서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명		학 년	학 번

◆ 평가항목별 평가 적정성

인정신청 교과목	평가자료 유형 (취득학점, 이수증, 자격증 등)	심의결과 (가.부)	심의 총평

◆ 평가 기준 준수 및 학점인정 적정성 평가

순번	교과목명	기준준수여부		평가	
		충족	미충족	인정	불인정

상기와 같이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인정 결과에 대하여 「학칙 제31조의11」 및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의 평가인정 심사기준 등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점인정위원회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수원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7] ○○○○학년도 ○학기 선행학습 학점인정 승인 결과

○○○○학년도 ○학기 선행학습 학점인정 승인 결과

(근거 : 학칙 제31조의11 및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학점인정 세부내역

학과명	성명	학년	학번	교과목명	인정학점		비고
					학점	성적	
합계							

0000과 학과장 귀하

[별지 8] 선행학습 학점인정 승인서

선행학습 학점인정 승인서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명				학 년			학 번	
학점인정	학점인정 신청사항(총괄)				학점인정위원회 심사결과 인정 학점			
	졸업 이수학점	학점인정 신청범위	학점인정 신청사항			교양	전공	계
			교양	전공	계			
평가인정 확정현황	이수 구분	신청 교과목명			학점	학점인정		
						인정	불인정	
	소계							

◆ 불인정 교과목

순번	이수구분	교과목명	신청학점	불인정 사유
기타 권고사항				

귀하가 「학칙 제31조의11」 및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한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대한 심의 결과, 위와 같이 학점인정을 확정하였기에 통보하니 귀하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교 학 처 장 (인)

[별지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수원과학대학교에서는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는 대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본인식별절차, 학점인정 심의	학점인정 신청 및 심의 종료시까지 활용, 3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선택동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사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 식별절차에 이용	학점인정 신청 및 심의 종료시까지 활용, 3년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시험(학력시험 등)	자격 확인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직무기술내용 확인을 위하여 산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거부할 시 학점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